

조세 재정

2017. 7. 31(통권 제52호)

BRIEF

상속·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

강성훈 부연구위원(044-414-2207)



BRIEF

상속·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

강성훈 부연구위원(044-414-2207)

I. 연구배경 및 목적	02
II.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특징	04
III. 분석결과	07
IV. 주요쟁점 및 이슈	11
V. 결론	14



* 본고는 강성훈(2017)을 토대로 재작성한 것임

I 연구배경 및 목적

- ● 일반적으로 상속 · 증여세제는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이전에 대해서는 상속 ·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 지나치게 높은 상속 · 증여세 부담은 경제주체의 조세회피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동일한 금액의 자산을 이전할 때 상속세 부담이 증여세보다 높은 경우 경제주체는 증여하려는 유인을 더 가지며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보다 더 높은 경우 상속하려는 유인을 더 가짐
 - 다만 경제주체별로 자산이전 동기가 다양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상속 · 증여세제가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역시 경제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 상속 · 증여세 부담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과세방식, 그리고 공제제도에 의해 결정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의 차이는 과세방식과 공제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함
 -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구조가 동일함
 -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어 과세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함
 - 상속에 대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토대로 상속세액이 산출되는 반면 증여에 대한 유산취득세 방식은 수증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토대로 증여세액이 산출됨
 - 상속공제는 세부담 측면에서 증여공제보다 더 유리하게 설계됨
 - 일괄공제제도로 인해 일반적으로 최소 면세점이 5억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임
 - 하지만 증여세는 일괄공제제도와 같은 기초공제(또는 기본공제)가 없음

- ● 상속 · 증여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크게 (1) 우리나라 상속 · 증여세 부담 수준과 (2)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속 · 증여세 부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함

- 상속·증여에 대한 높은 세부담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는 자산이전에 대한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조세회피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 수준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산이전에 대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추정한 후 이를 비교분석함
-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등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음
 -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주된 목적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높은 상속세 부담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고용,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사업용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상속세가 기업의 영속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기업상속공제제도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됨
 - 기업상속공제한도액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에는 그 금액이 최대 500억원임
 - 정책대상은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이후 정책대상 중견기업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2017년에는 연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현 상황에서 기업상속공제제도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향후 동 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사례 분석을 수행함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공제혜택 대상자와 공제규모, 그리고 사후관리제도를 비교분석함

II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특징

1.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특징

-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과 증여세 부담의 차이는 과세방식과 공제제도에 의해 발생함
 - 상속·증여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
 - 최고법정세율은 50%이며, 최고법정세율에 대한 과세표준 임계점은 30억원임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는 서로 상이한 과세방식과 공제제도를 가짐
 -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산출되는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수증인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산출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 상속세에는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자녀공제 등이 있고 증여세에는 배우자공제, 직계존비속 공제 등이 있음
 - 상속세는 일괄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상속가액 5억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부담이 없으나, 증여세는 일괄공제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상속의 경우 자산이전 주체를 구분하여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증여의 경우 특정 친족 범위(예: 직계존속 등) 내의 자산이전 주체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운영함
-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과세방식과 공제제도의 차이로 인해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함
-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는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을 이전한다고 할 때 유산세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보다 더 큰 경향이 있음
 -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총자산을 토대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자산을 토대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 유산세 방식의 경우, 상속인 수가 총상속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의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낮아짐
 - 다만, 증여공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등에 대해 각 집단의 증여자들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공제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더 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을 고려해볼 때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설계됨
-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가액이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이 없고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공제받음
 -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배우자공제가 있으나 상속세의 배우자공제 한도가 증여세의 경우보다 더 큼
 - 상속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해주고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줌
 - 증여공제의 경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중 6억원을 공제해줌
 - 일반적으로 유산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세부담 관점에서 더 불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동일한 자산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 부담보다 더 클 수 있음
 - 예컨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고 총이전자산에 대해 5천만원의 자녀공제를 적용하지만 상속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전한 각각의 자산에 대해 5천만원의 자녀공제를 적용함
 - 일괄공제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 상속세액은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총증여재산과 총상속재산의 합산 금액을 토대로 산출됨

2.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특징

-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과세방식을 가짐
 - 국가에 따라 유산취득세 방식과 유산세 방식 둘 중 하나를 채택하여 운영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과세방식으로 사용함
 - 미국은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통합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유산세 방식을 과세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본은 총상속재산가액에 기본공제를 먼저 제외한 후 법정상속비율대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이 다소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제도는 일반적으로 서로 동일하며, 미국과 일본 등은 증여세의 경우 기본공제제도(또는 기초공제제도)를 추가적으로 운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국은 기본공제제도와 통합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생애증여는 역시 상속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산출함
 - 독일과 프랑스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인적공제를 가짐
 - 인적공제는 친족관계가 가까울수록 인적공제 규모가 크도록 설계되어 있음
 - 일본은 상속세 과세체계(과세표준 구간, 법정한계세율)가 증여세의 경우보다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부의 원활한 이전을 유도하는 다양한 증여세 공제제도를 가짐
 - 일본은 증여에 대해 매년 110만엔을 기초공제해주고 주택취득, 교육지원 등을 목적으로 증여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해줌
 - 일본은 60세 이상이 된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 또는 손주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 납세자가 기초공제제도와 과세이연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함

Ⅲ 분석결과

1. 세부담 비교분석 방법

- 본 장에서는 가족 간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우리나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세부담을 비교하고자 함
 - 상속과 증여가 반드시 가족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등 가족 외의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산이전도 존재함
 - 하지만 자산이전 중 가족 간의 이전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상속·증여세제의 전반적인 세부담을 비교하기에 적합함
 - 또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자산이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특례를 통한 혜택이 주어지는 등 상속·증여세제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됨
- 본 연구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주요국의 세부담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일한 상황을 가정한 후 각국의 상속·증여세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부담을 비교하고자 함
 - 주요국의 과세자료 등을 수집하여 실효세율 등을 비교할 수도 있으나, 실효세율 산출에 적합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 주요국의 과세자료가 확보되더라도 과세자료에는 상속 및 증여가액이 낮아 신고의무가 없는 자산이전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자료상 실효세율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체 실효세율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자료를 통해 계산된 실효세율은 세제뿐만 아니라 자산이전 규모에 대한 분포 등 세제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제의 차이로 인한 세부담을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함
 - 과세자료가 아닌 명목 GDP 대비 상속세수 및 증여세수를 비교할 수도 있으나, 명목 GDP가 상속·증여세의 과세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 세부담 비교에 적합하지 않음
 - 이에 가상의 상황에 대하여 각국의 세제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증여세를 비교하여 상속 및 증여가액 대비 결정세액을 비교함

- ● 세부담 비교를 위한 상황은 크게 일시적 자산이전과 지속적 자산이전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일시적 자산이전은 일정 규모의 자산이 한 번에 이전된 것을 의미함
 -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산이전은 일시적인 자산이전에 해당됨
 -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증여와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자산이전은 주로 일시적인 자산이전임
 - 지속적 자산이전은 일정 규모의 자산이 일정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증여된 경우를 의미함
 -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은 지속적 자산이전에 해당함
 - 지속적 자산이전이라도 실제로는 자산이전 규모와 주기가 변동될 수는 있으나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일정하다고 가정함
 - 일시적 자산이전과 지속적 자산이전을 구분하는 이유는 동일한 규모의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기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시적 자산이전만 고려할 경우 증여기간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임
 -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일정기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상속과 합산하여 상속세로 과세함
 - 미국과 일본의 경우 매년 일정 규모의 증여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동일한 규모의 자산이전이라도 증여기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짐

2. 세부담 비교분석 결과

- ● 우리나라는 상속세에 대한 과세시작점이 주요국 중 중간수준에 속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일본 다음으로 세부담 수준이 높음
 -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과세방식으로 다른 주요 국가(미국 제외)와 달리 자녀수에 영향을 받지 않음
 -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짐
- ● 우리나라는 세부담 측면에서 상속보다 증여가 더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증여세 부담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임

- 미국은 기본적으로 증여를 상속과 동일하게 보며, 매년 14,000달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있어 상속세 부담보다 증여세 부담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음
- 독일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세제상의 차이가 없으며 거주주택의 경우 일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보다 증여가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음
- 프랑스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 유사한 공제제도를 가지지만 현금 증여에 대해 추가적으로 31,865유로(약 4천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어 증여가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프랑스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상속이 증여보다 세부담이 낮음
 - 상속의 경우, 배우자는 상속가액 전액을 공제받고 증여의 경우 80,724유로(약 9천만원)를 공제받음
- 일본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 부담보다 더 크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
 - 60세 이상의 부모가 20세 이상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자는 과세이연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 매년 110만엔(약 1천만원)의 증여재산가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등을 공제해줌

3. 기업상속공제제도 비교분석 결과

- ●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 기업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연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기업상속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본은 상장기업, 자산관리기업 등이 아닌 중소기업에 한정함
 - 프랑스는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수공업, 농업, 공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상속세 특례제도를 운영함
 - 독일은 자산 규모가 9,000만유로(약 1,145억 5천만원) 미만까지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2,600만유로(약 330억 9천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으로 기업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제공함
- ● 우리나라 공제규모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미국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폐지하였으나, 동 제도를 운영할 당시의 한도금액은 67만 5천달러(약 7억 7천만원) 수준임
 - 일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3분의 2를 한도로 납부유예를 해줌
 - 독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자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제규모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됨
 - 자산 규모가 2,600만유로 이상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등으로 인해 가업승계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이를 입증한 경우 수동자산 등의 매각을 통해 납부할 수 없는 상속세분을 공제받거나 가업상속공제율 100% 또는 85%에서 자산 규모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차감한 공제율을 적용받아야 함
 - 프랑스는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75%를 비과세함
- ● 사후관리제도는 크게 지분요건, 경영요건(또는 대표이사 재직요건), 고용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요건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주요국에 비해 까다롭고 엄격한 편인 것으로 보임
- 독일은 지분요건이나 경영요건은 없음
 - 프랑스는 지분요건이 있으나 지분 유지기간이 우리나라(10년)보다 짧고 상속개시 후 유지해야 할 지분율도 낮으며, 경영요건은 없음
 - 프랑스의 경우 2년임
 - 일본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혜택이 제공되며, 지분 유지기간 및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음
 - 일본의 경우 5년임
 - 프랑스는 고용요건이 없음
 - 우리나라와 다른 주요국 간의 고용요건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매년 일정 규모의 고용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가 120% 이상 되어야 하는 등 고용확대 의무가 있다는 것임

IV 주요 쟁점 및 이슈

1. 상속·증여세 공제수준

- 상속·증여의 세부담 완화 및 과세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여공제 등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증여의 경우, 일괄공제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초공제제도나 매년 일정 금액의 증여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임
 - 일본과 프랑스는 공제제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미국, 프랑스 등은 상속시 배우자공제의 한도가 없음
- 반면에, 공제수준의 확대 및 증여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형평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음
 - 상속은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한번 발생하나, 증여의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증여와 상속공제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증여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경제·사회적 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함
 - 우리나라의 배우자 공제한도는 최대 30억원으로 가구별 순자산 분포 등을 감안할 때 낮지 않은 수준임

2. 과세방식

-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증여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음

- 고액재산가가 재산을 미리 나누어서 사전증여하면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로만 과세되지만 상속개시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거나 상속되는 경우 유산총액 기준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 유산취득세 방식은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함
- ● 반면에, 현행 상속세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자는 주장도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생애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결산하는 점이 있으며, 상속인별 취득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집행도 용이함
 - 유산취득세 방식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이 지연되면 세액 확정기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유류분 청구소송 등 분쟁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미분할될 수 있음

3. 기업상속공제제도

- ● 기업상속공제에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거나, 일본의 경우처럼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 가능할 것임
- ● 반면에, 기업승계시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기업상속공제를 유지하거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을 현재의 공제수준을 유지하거나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사후관리 부담 완화가 필요함

4. 기타 검토과제

-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7%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으로 과세인프라가 확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여타 세목은 신고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증여세의 신고납부세액공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음
 - 상속세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2%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신고세액공제 축소 시 세부담은 주로 고액재산가에게 귀속됨

- 반면에, 신고세액공제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신고세액공제는 세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상속·증여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증여세의 경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2011년 일감몰아주기 과세 도입 이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등 보완이 이루어져 왔는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이슈가 된 바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지원하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세부담 회피와 관계없는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익법인이 세제지원을 통해 받은 재원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하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V 결론

- ●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속 · 증여세 부담이 높고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격차도 큰 편임
 - 높은 세부담은 조세회피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제가 증여세제보다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속 · 증여세제는 경제주체의 자산이전 시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다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향후 상속 · 증여세제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과 공제제도가 일관되게 설계되는 것이 필요함
 - 이때, 상속 · 증여세제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부의 집중을 막고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 증여세의 누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함
 - 다만, 상속 · 증여세의 과세방식 및 공제제도의 개편은 고자산가의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
 - 상속 · 증여세제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모색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주요 쟁점 및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한편,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특징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공제규모는 높은 수준이지만 사후관리가 까다롭다는 것임
 -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됨
 - 한편으로 사후관리가 까다로울수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업 유지와 고용 유지 및 확대요건은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컨대,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확대의무가 있어 기업 유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 기업상속공제는 상속과정에서 기업의 계속성과 고용안정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제도를 정확히 분석·평가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개편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동 제도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상속대상 기업 중 기업상속을 신청한 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업상속공제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실제 공제금액 등의 정보가 필요함

| 참고문헌 |

- 강성훈,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BRIEF

상속·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

2017. 7. 31(통권 제52호)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123
 - 팩 스 : 044-414-2129
 - 인쇄처 : 아미고디자인
-

